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4호의5서식] [ ] 기능통화 [ ]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(변경신청)서 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1. 신고(청)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 소재지 ④대표자 성명 ⑤생년월일 2. 신고내용 ⑥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대상 [ ] 기능통화 도입기업 [ ] 해외사업장 (1) 최초 신고시 ⑦적용할 과세표준 계산방법 [ ] ｢법인세법｣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1호의 방법 [ ] ｢법인세법｣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2호의 방법 [ ] ｢법인세법｣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3호의 방법 ⑧신고방법 적용사업연도 개시일 년 월 일 ⑨채택한 기능통화 종류 ⑩｢법인세법｣ 제53조의2(제53조의3)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적용시 적용환율 신고 [ ]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 [ ] 평균환율 (2) 변경신청시 ⑪당초신고방법 ⑫변경신청방법 ⑬변경방법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년 월 일 ⑭변경사유 [ ]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 [ ]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[ ]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[ ]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다른 경우 ⑮당초채택 기능통화 ⑯변경 기능통화 ⑰과세표준 계산방법을 ｢법인세법｣ 제53조의2(제53조의3) 제1항제2호로 변경할 경우 적용환율 신고 [ ]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 [ ] 평균환율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91조의2 제1항･제3항 및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고서(변경신청서)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고(신청)인 (서명 또는 인)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. ⑪당초신고방법, ⑫변경신청방법은 ⑦적용할 과세표준 계산방법 1,2,3의 방법 중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. 2. ⑭변경사유란은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91조의2제2항 및 제91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사유에 O를 표시하며, ⑩,⑭,⑰란도 해당사유에 O를 표시합니다. 3. 과세표준 계산방법 변경신청을 한 법인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은 변경하기 전의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. 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